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3
----------	-----------

제안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인용된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 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로 한다.</p>	<p>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p>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서울특별시 조례 관련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